

2018년 개정세법 – 법인과세 관련 주요내용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25%) 신설,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2018. 귀속 70%, 2019. 귀속60%), 적격합병분할 요건 강화(고용승계),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수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부분세무조사의 명확화 등]

2017. 12. 19. 공포된 세법(2018. 1. 1. 시행) 및 2018. 2. 13. 공포된 세법시행령(2018. 2. 13. 시행)의 개정내용 중 법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

종전에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이익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하여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5%(종전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인상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 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

개정 전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	□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 일반기업: ('18귀속) 70% → ('19귀속) 60% ○ 중소기업: (좌 동)

3.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승계를 과세 이연 요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 44조, 제44조의3, 제46조, 제46조의3, 제47조).

개정 전	개정
□ 내국법인 간의 합병 또는 내국법인의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 요건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분할의 경우 5년 이상) · 합병·분할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분할의 경우 전액) · 합병·분할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사업 영위 · 지배주주 등의 합병·분할로 부여 받은 신주 보유 〈추 가〉	□ 고용승계 요건 추가 (좌 동)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과세 이연된 법인세 추정 요건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지배주주 등이 교부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추 가〉	□ 고용승계 사후관리요건 추가 (좌 동) · 합병 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분할의 경우에도 동일)
--	---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산입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21조의2).

개정 전	개정
〈신 설〉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결정에 따른 지급금액 중 실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국외에서 지급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5.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대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합리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R&D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축소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개정 전	개정
□ 일반R&D비용 세액공제 ○ 당기분 - 대기업: 1~3%*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중견기업: 8% - 중소기업: 25% ○ 증가분 - 대기업: 30%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	□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축소 ○ 당기분 - 대기업: 0~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좌 동) ○ 증가분 - 대기업: 25% (좌 동)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한도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개정 전	개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7년형: 5년간 100% + 2년간 50% · 5년형: 3년간 100% + 2년간 50%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의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감면 한도(A+B) ○ 투자금액 기준(A) · 7년형: 외국인투자금액의 50% · 5년형: 외국인투자금액의 40% ○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B) - 고용 인원별 일정 금액(①+②+③) 추가 감면 ①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2천만원 ②청년근로자·60세 이상 등: 1천5백만원 ③기타: 1천만원 -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 · 7년형: 외국인투자금액의 40% · 5년형: 외국인투자금액의 30%	□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 인상 (좌 동) ○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B) (좌 동) -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 · 7년형: 외국인투자금액의 40% → 50% · 5년형: 외국인투자금액의 30% → 40%
--	--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7.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의 일실 방지를 위하여 신탁관련 재화공급의 특례를 신설하고(부가가치세법 제10조),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개정 전	개정
□ 재화공급의 특례 ○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 〈신 설〉	□ 신탁관련 특례 신설 (좌 동)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단, 담보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 2018.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담보신탁은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신 설〉	□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 ○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제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 부과 - 2018. 1. 1. 이후 위탁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추 가〉	□ 신탁관련 규정 추가 ○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탁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2018. 1. 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8.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를 금지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개정 전	개정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만 규정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실시 ○ 재조사 금지 〈신 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보완 (좌 동) ○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 금지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부터 적용됩니다(2018. 1. 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

9.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가 금지됨을 명문화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개정 전	개정
□ 세무조사 중지에 관한 규정만 존재 〈신 설〉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요구 금지 명문화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금지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부터 적용됩니다(2018. 1. 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

10.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세무조사 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11).

개정 전	개정
□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세목 특성, 납세자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등을 고려 특정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목별조사를 허용	□ 부분세무조사* 법적 근거 명확화 *전부조사의 예외로서 특정 사업장, 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조사 □ 부분세무조사의 허용사유 구체적으로 규정 ○ 사유 ①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②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조사 ③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④구체적인 탈세 제보시 해당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⑤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등 ○ 부분세무조사의 제한 -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상기 ①, ②를 제외하고 2회 이내로 실시

□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추 가〉	□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추가 (좌 동) ○ 부분조사 후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
--	---

※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 공인회계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박기범 변호사 / 공인회계사

TEL. 02 316 4251

E-Mail. gbpark@shinkim.com

노형철 세무사

TEL. 02 316 4483

E-Mail. hcrho@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